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-65호

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「방송법」 제42조의3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25조의3, 「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·제4조, 「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(방통위 고시 제2011-42호, '11.9.7.)」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9월 7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고

1.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대표단체 (자격기준)

- (사업자단체 부문)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 중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지역방송국을 대표하는 단체(한국방송공사 계열, 문화방송 계열, 지역민영방송 계열, 독립라디오방송 계열 중 2개 이상 계열을 대표할 것)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·운영
- (학술단체 부문)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
- (비영리민간단체 부문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·운영

2. 추천 인원 : 각 단체별 2인 이내 후보 추천 (부문별 각 1인 총 3인 위촉)

3. 추천 후보 자격 기준

-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- 교육·문화계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-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
- 시청자·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
- 기타 지역방송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,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4. 추천 기한 : 2011. 9. 26.(월) 18:00까지

5. 추천 서류 등

- (추천서류) 추천 단체 및 후보를 확인·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
 - 추천 공문 1부, 추천단체 정관 1부, 추천단체 활동실적(학술단체의 경우 연구실적 포함)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,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,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, 추천 후보자 이력서(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) 1부, 후보자 추천 동의서 1부
- (제출처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(우 110-777),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(02-750-2436, 2439)
- (제출방법)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6.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직무 (붙임 1,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참조)

7.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임기 : 위촉일로부터 3년 (연임 가능)

8. 기타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 02-750-2436, 2439)으로 문의

- 붙임 1.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1부.
2. 위원 후보자 추천 동의서(양식) 1부.